가 .

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. 이 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산하 전담부서를 마련하였으며,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.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범주를 확대·명시하였고, 처벌보다 예방과 보호를 할 수 있는 행정적·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 이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표 3-8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: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

##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

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

가

- ① 서면사과
- ②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
- ③ 학교에서의 봉사
- ④ 사회봉사
- ⑤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- ⑥ 출석정지
- ⑦ 학급교체
- ⑧ 전학
- ⑨ 퇴학처분
  - 위의 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,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함
  -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을 경우 관련 결석은 출석일 수 에 산입할 수 있음
  - 자치위원회는 협박, 보복행위에 조치내용을 가중 할 수 있음
  - 가해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전학을 올 수 없음
  - 가해학생에게 정도에 따라 병과조치 할 수 있음
  - 가해 학생이 조치를 회피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 할 수 있음
  -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해야 함
  -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을 경우 관련 결석은 출석일 수에 산입할 수 있음

##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사항

- 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
  - ① 심리상담 및 조언
  - ② 일시보호
  -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  - ④ 학급교체
  - ⑤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김난주(2013)는 이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제도적 성과를 위한 소모적인 절차를 줄이고, 가· 피해학생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인력 배치, 또래, 학교, 가정 내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,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앞으로 더 욱 필요하다고 보았다.

## (2)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은 초·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령으로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음. 학교장이 「학교폭력예방법」 제 17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했을 때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에